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서울대교구이사회 시행세칙

1. 총 칙

가. 명칭과 소재

본회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라 칭하며, 사무실은 서울대교구 관할 내에 둔다.

나. 목 적

본회는 빈첸시오 아 바오로 성인의 영성과 업적을 토대로 고통 받는 이들의 벗이 되어 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그 어려움의 원인이 되는 상황까지도 바로잡고자 노력한다. 회원들은 가난과 나눔의 정신으로 고통 받는 이들과 맺는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다. 활 동

어떠한 자선 활동도 본회와 무관하지 않다. 직접 방문을 통하여 고통 받는 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인간의 존엄성과 고결함을 증진시키는 모든 종류의 도움이 본회의 활동에 포함된다. 아울러 본회는 종교, 견해, 인종, 신분이나 사회계급과 관계없이 고통 받는 모든 이에게 봉사한다.

라. 성 격

본회는 상기의 목적과 활동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가난한 이들을 도우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의 가톨릭 평신도 단체이다

마. 회칙준수

서울대교구 소속 모든 빈첸시오안들은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세계총이사회가 인준한 회칙, 국제정관, 한국이사회의 내부규칙 및 이 시행세칙을 준수해야 한다.

2-1조. 협의회

가. 협의회

각 협의회는 남성협의회, 여성협의회, 혼성협의회, 청년협의회, 특별협의회로 구성될 수 있다.

각 협의회는 본당 사목구, 지역, 학교, 회사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단체 내에 설립될 수 있으며, 특수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설립될 수 있다.

단, 본당의 사목방침에 부응하여 탄력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경우 특별협의회를 설립할 수도 있다.

나. 회원

회원은 가톨릭신자 또는 예비신자 또는 적어도 가톨릭 가르침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에 한해 회원이 될 수 있다.

활동회원은 가톨릭 신앙에 따라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봉사하며 살아가기를 열망하며, 빈첸시오회의 회합과 자선활동에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명예회원은 협의회의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정기적인 기부금으로 빈첸시오회를 도와주는 사람들이다.

빈첸시오 가족은 빈첸시오 회원과 그 가족들 이외에도, 명예회원, 그리고 빈첸시오회가 그리스도교 사랑의 참된 신앙 공동체 정신으로 물질적 지원을 해 주는 대상자들을 포함한다.

2-2조. 협의회 활동

협의회의 주요 활동은 가정과 병원, 단체, 그리고 도움과 위로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방문하는 것이다. 어떠한 자선활동도 빈첸시오회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아야한다.

빈첸시오회의 특수사업은 인력과 자금을 지원해 주는 협의회들에 의존한다.

2-3조. 협의회의 회합

각 협의회는 자체적으로 정한 장소와 날짜, 시간에 정기적으로 회합을 가진다.

회합은 매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협의회 회합은 사랑과 형제애의 정신, 그리고 빈첸시오회를 활성화시키는 영성으로 고취되어야한다. 회합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난다.

영적독서는 영적 지도자나 참석한 회원 가운데 한 사람이 하며, 토론 또는 묵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회원들은 빈첸시오회의 활동을 보고하고, 자선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미 했거나 앞으로 할 활동에 대하여 고찰한다.

회원들은 정시에 참석하여야 한다.

2-4조. 협의회 회장 선거와 임기

가. 선출방법은 구두 추천에 의하고 2인 이상 추천이 있을 시에는 비밀 투표에 의한다. 협의회 회원 과 반수의 참석과 참석회원 2/3의 득표로 선출되고, 2/3의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제2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가 회장으로 선출된다.

나.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다. 회장 입후보자는 자기 주소 관할 외 협의회에서는 회장에 출마할 수 없다.

라. 임명직 임원은 퇴임 회장 임기 만료와 동시에 임기가 종료된다.

2-5조. 협의회 회장

협의회장은 매월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지구이사회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협의회장은 부회장, 총무, 회계와 함께 지구이사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회장은 협의회와 협의회 회원이 돕고 있는 사람들에게 봉사한다.

회장은 협의회 회원의 모든 활동에 빈첸시오회의 정신과 회칙이 준수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

회장은 회원들이 가난한 이들을 도울 때 개인적으로 최대한 봉사를 하도록 지도하고 도와준다.

회장은 이사회의 회의와 협의회간 회합에 참석함으로써 이사회와 인근 협의회들의 유대에 중요한 연결 고리 역할을 한다.

회장은 다른 단체들과 협력하며, 자기 협의회를 공식적으로 대표한다.

회장은 보고서 준비를 지도하며, 협의회가 소속된 이사회에 그 보고서를 제출한다.

회장직은 명예가 아니라 책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2-6조. 협의회 부회장

지명된 부회장은 회장이 궐석 중인 경우, 회합에서 회장을 대리한다.

2-7조. 협의회 총무

'서기'의 호칭을 '총무'로 변경한다.

총무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제출하며, 회장을 보좌하여 협의회 업무 총괄한다.

2-8조. 협의회 회계

회계는 협의회 기금을 책임지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확하고 적절한 기록 보존을 책임진다.

회계는 회장과 회원들이 재정 상태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준다.

협의회의 지출은 협의회 활동과 빈첸시오회가 관여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에 국한된다.

협의회의 회계장부는 매년 감사 받아야 한다.

지구회장단은 매년 말 각 소속 협의회 회계 감사를 할 수 있다.

2-9조. 협의회의 영적 지도자

영적 지도자는 모든 협의회의 생활에 매우 중요하다. 영적 지도자는 사제나 수도자 또는 경우에 따라 그에 적합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평신도가 될 수 있다.

영적 지도자는 협의회 회장이 본당 사목구 주임과 협의회 회원들과 상의한 후에 정한다.

영적 지도자는 정기적으로 회합에 참여하여야 하며, 토론에 자유로이 참여하고, 특히 회원 개개인과 협의회의 영성 생활이 성장하도록 도와준다.

2-10조. 이사회

교구이사회와 지역 . 지구이사회

가. 교구이사회

교구이사회, 3개 지역이사회, 18개 지구이사회를 둔다.

교구이사회는 교구회장과 부회장 및 3개 지역회장 및 18개 지구회장과 교구 청년대표로 구성한다.

나. 지역이사회

지역이사회는 지역회장과 부회장 및 지역 소속 각 본당 협의회장으로 구성된다.

다. 지구이사회

지구이사회는 지구회장과 부회장 및 지구 소속 각 본당 협의회장으로 구성된다.

교구이사회와 지구이사회는 한국이사회가 추천하여 세계총이사회에서 제정한다.

교구이사회와 지구이사회는 협의회와 지구 또는 교구이사회 사이에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직된다.

이사회는 회장은, 부회장, 총무, 회계 그리고 그 이사회에 직속된 모든 협의회와 이사회의 회장들이다.

그 이사회의 회장, 그리고 그 이사회에 직속된 모든 이사회와 협의회의 회장들이 언제나 그 이사회의 과반수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 조항의 정신이다.

소속된 모든 이사회와 협의회의 회장들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 대리자를 보내야 한다.

회장은 이사회와 협의한 후에 특수사업의 대표들과 빈첸시오회의 다른 회원들을 그 이사회의 고문으로 임명할 수 있다.

2-11조. 교구이사회와 지구이사회들의 활동

교구이사회와 지구이사회는 자선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의회들에 대한 봉사를 최우선으로 한다.

이들 이사회는 자신들에게 소속된 모든 협의회와 이사회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조정한다.
이들 이사회는 다른 단체들과 협력한다.

이들 이사회는 연례보고서를 검토하여 그에 대한 평가보고서와 함께 그 보고서를 직속 상위 이사회에 신속히 제출한다.

이들 이사회는 세계 총 이사회에 보낼 협의회 설립과 이사회 제정에 관한 승인 신청서를 자신들이 소속된 이사회에 위촉한다.

이들 이사회는 영성, 빈첸시오회의 소명, 사회활동, 정의에 관한 문제를 주제로 회원과 예비회원들을 위한 최대한의 양성과 훈련 과정을 계획한다.

2-12조. 교구이사회와 지구이사회 특수사업

지구이사회는 지구내의 모든 협의회와 관계된 특수 사업과 중요한 조치들에 책임이 있다.
빈첸시오회 창설자들은 본당 사목구 협의회 이외의 다른 어떤 자선 단체도 설립할 의사가 없었다.
그러나 그 어떤 자선활동도 빈첸시오회와 무관하지 않다.
성령께서 협의회 활동에 기꺼이 베풀어주신 은총으로 전 세계에 걸쳐 빈첸시오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점, 피난처, 말기 환자를 위한 병원(호스피스), 노인들을 위한 요양원과 양로원이 자연스럽게 번창해 왔다.

특수사업은 협의회 활동에서 출발하며, 선행을 실행하면서 서로 돕고 일치단결하며 협력하는 협의회 모습 보여 주는 한 예이다. 특수사업은 어느 한 협의회나 몇몇 협의회가 정상저간 협의회 활동으로 그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다고 느낄 경우, 또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이 있을 경우에 바람직하다. 정상적인 협의회 활동을 위한 예산을 세운 다음 특수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수사업위원회가 더욱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요구들의 예는, 특수계층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학문 보급, 집, 또는 숙소, 옷이나 가구 등의 수집과 분배를 위한 지역 복지시설 조직이다. 청년 조정자의 고용도 특수사업으로 간주 될 수 있다.

특수사업은 대규모적이고 비개인적이기보다는 소규모적이고 개인적이다. 규모는 사업의 종류, 장소, 회원들의 역량에 따라 달라진다.

특수사업은 사업 소재지의 이사회에서 임명한 회장의 통제 아래 위원회가 운영한다.

특수사업위원회는 이사회에 권한에 종속되며, 사업의 진행과정과 집행과정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모든 특수사업의 재정기록은 해마다 감사를 받아야 하고, 서명된 회계장부는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특별한 목적으로 유증(遺贈)이나 신탁이 제공되었음을 알았을 때, 그 조건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3조. 교구이사회와 지역 . 지구이사회 회의

- 가. 교구이사회와 지역이사회는 연 4회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갖는다.
- 나. 지구이사회는 최소한 연 6회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가져야 한다.
- 다. 교구이사회는 지역 . 지구이사회 회장이 교구 . 지역 . 지구이사회 회의에 연 1/2이상 불참하는 등 회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지역 . 지구이사회에 회장 개선 권고를 할 수 있고, 회장 개선 권고를 받은 지역 . 지구이사회는 신임 회장을 재선출하여야 한다.
- 라. 교구이사회 개최 시 지역 또는 지구이사회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할 경우 부회장을 대리 참석 시킬 수 있다.

이사회 회원들은 그들이 소속되어 있는 이사회 또는 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회합의 빈도를 결정한다. 일 년에 두 번의 회합은 가져야 한다.
각 협의회와 이사회는 그들의 활동에 대하여 보고하고 공통 관심사들을 토의한다.
특수사업위원회 위원장들은 그들 사업의 진행과정을 보고한다.

2-14조. 교구이사회 및 지역 . 지구이사회 회장 선거와 임기

가. 선출방법

교구이사회장의 선출은 지역 및 지구이사회장 그리고 소속 협의회장에 의하며, 지역 이사회장의 선출은 소속 지구회장 및 협의회장에 의하고, 지구이사회장은 소속 협의회장에 의한다.

반드시 비밀투표로 하며, 선출은 구성원의 과반수이상 참석과 참석 자의 과반수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나. 회장 후보자의 자격

- ㄱ. 세례 . 견진성사를 받은 교우로써 빈첸시오회 입회 후 5년이 경과된 자로써 만 65세 이하로 제한한다.
- ㄴ. 본당 협의회 회장 또는 지구 . 지역이사회 회장으로 역임했거나 현재 재임중인 자
- ㄷ. 소속 본당 주임 사제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ㄹ. 자기 주소 관할 외 지역 . 지구에서는 회장에 출마할 수 없다.

다. 이사회는 퇴임 회장의 퇴임 1개월 전에 입후보 등록과 선거 일자를 각 지역 . 지구 . 협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라.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마. 임명직 임원은 회장의 임기 만료와 동시에 임기가 만료된다.

개인 자격으로 임명된 임명직 회원(부회장 이하)은 투표권이 없다.

이사회는 퇴임하는 회장의 퇴임 2개월 전에 회장 입후보 등록을 접수하여야 한다.

회장선거는 입후보 등록을 접수한 2개월 후에 실시한다. 입후보 등록은 이사회가 관할하는 각 협의회와 이사회 그리고 직속 상위 이사회에 회람시켜야 한다.

단 한명이 입후보 하였을지라도 이사회 회원들이 그 사람의 선출에 지지 또는 반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퇴임하는 회장은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재출마 할 수 없다.

2-15조. 교구이사회와 지역 . 지구 이사회 '회장'

이사의 회장은 사기 양양을 위해서 관할 구역 내의 이사회들과 협의회들의 회합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여야 한다.

2-16조. 교구이사회와 지역 . 지구 이사회 '임원회'

이사의 회장은 자문 역할을 하는 임원의 도움을 받는다. 회장은 이사회와 협의한 후에 임원을 임명한다.

임원회는 적어도 1명의 부회장, 총무, 회계, 청년 대표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 특수사업위원회 위원장들, 그 외 특별 임무 담당자들로 구성된다. 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보통은 이사회 회의 사이에 한다.

모든 임명직은 임기가 제한되어 있고, 신임 회장이 취임하면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신임 회장이 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임명에 대해 숙고할 적절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2-17조. 교구이사회와 지역 . 지구이사회 '부회장'

부회장은 지속적이고 능률적으로 회장에게 협력한다.

부회장은 이사회 회의, 협의회 회합, 특수 사업 위원회 회합 등에 참석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지명된 부회장은 회장을 대리한다.

2-18조. 교구이사회와 지역 . 지구이사회 '총무'

총무는 회의록을 준비하고 제출하며, 통계업무와 서기업무를 책임진다.

총무는 협의회 설립과 이사회 제정에 관한 기록, 그리고 이사회 회의와 임원회 회의에 참석한 회원들의 출석 기록을 보존한다.

총무는 상위 이사회에 보낼 각 협의회와 이사회의 통계 보고서를 조사하여 작성한다.

2-19조. 교구이사회와 지역 . 지구이사회 '공동기금'

지구 이사회는 공동 기금의 관리에 대한 결정을 한다.

기금은 외부의 기부금, 관할 구역 내에 있는 협의회에서 이사회에 보내 온 기부금, 그리고 상점과 복지 시설 같은 특수사업의 잉여금으로 유지된다.

공동 기금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빈첸시오회의 지출 비용을 부담하고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협의회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쓰인다.

잉여기금은 직속 상위 이사회에 보내야 한다.

2-20조. 교구이사회와 지역 . 지구이사회 '회계'

회계는 이사회의 기금과 수입과 지출의 정확하고 적절한 기록 보존을 책임진다.

회계는 회의가 있을 때마다 회계 보고서를 제출하여 회원들이 재정 상태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회계는 매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예산안을 준비하며, 매달의 수입과 지출 결과를 이사회 회원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회계는 상위 이사회에 보낼 협의회들과 이사회들의 회계 보고서를 조사하여 작성한다.

이사회의 재정 기록은 매년 감사를 받아야 한다.

2-21조. 감 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재정 전반에 대하여 년 1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감사의 임기는 3년이며, 총회의 인준을 받으면서부터 시작한다.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한 감사의 임기는 전임 감사의 잔여기간에 한한다.

2-22조. 교구이사회와 지역 . 지구이사회 '영적 지도자'

영적 지도자는 이사회 활동에 아주 중요한 구성원이다.

영적 지도자는 사제나 수도자, 경우에 따라서는 그에 적합한 능력과 준비를 갖춘 평신도가 될 수 있다.

영적 지도자는 주교와 이사회 회원들과 협의를 거친 후에 회장이 정한다.

영적 지도자는 정기적으로 회합에 참석하고, 토론에 자유로이 참여하며, 특별히 회원 개개인과 이사회
의 영성 생활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영적 지도자는 각 이사회와 협의회 영적 지도자들 사이에 특히 외롭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는 지원 체제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권장 받는다.

2-23조. 담당사제

담당사제는 교구장에 의해 임명되고 교회 가르침에 따라 본회의 제반업무를 지도한다.

부 칙

본 회칙은 총회의 의결과 교구장의 인준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그 효력을 갖는다.

(2011.4.5 천주교 서울대교구 단체 설립 인준)